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48 발의연월일: 2021. 5. 12.

발 의 자: 백종헌・박성민・정진석

서병수・장제원・이태규

이주환 • 전봉민 • 지성호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 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사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 고 있음.

또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영업정지 시 폐업등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 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,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제 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, 등록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완화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정한다"를 "정하고,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, 내용 및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로 한다.

- ④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.
-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- ①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. 이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본다.

- 8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.
- 1. 발주청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
- 2.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으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
- 3.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	제18조(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
소 등) ① ~ ③ (생 략)	소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
	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
	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
	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
	부과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
	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
	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
	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
	한다.
<u><신 설></u>	⑥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
	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
	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
	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
	<u>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⑦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1항
	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
	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
	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
	수 있다. 이 경우 산림기술용역
	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

<신 설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정지처분,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<u>정한다</u>.

- 까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본 다.
- ⑧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.
- 1. 발주청이 제6항에 따른 통지
 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
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업무
 계약을 해지한 경우
- 2.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으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
- 3.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

<u> </u>		

-----<u>정하고,</u>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 는 위반행위의 종류, 내용 및

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